

정일

학 칙

2021년 2월 19일 개정



정일여자중학교
<http://chongil.m.s.kr>

정일여자중학교 학칙

제	정	1983년	3월	1일
1차	개정	1996년	3월	1일
2차	개정	1997년	11월	3일
3차	개정	1999년	11월	3일
4차	개정	2002년	12월	18일
5차	개정	2004년	6월	1일(관리과-3105호)
6차	개정	2005년	2월	24일(학무과-1792호)
7차	개정	2005년	4월	6일(학무과-4187호)
8차	개정	2006년	3월	10일(관리과-1969호)
9차	개정	2009년	3월	1일
10차	개정	2011년	4월	6일
11차	개정	2013년	4월	5일
12차	개정	2018년	4월	18일
13차	개정	2019년	12월	26일
14차	개정	2021년	2월	19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정일여자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511(공평동)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 자격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승인을 받는 자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한 자
- ② 교육청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③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제3장 학급수 및 학생정원수

제6조 (학급수) 학급수는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2006. 3. 10. 개정)

제7조 (학생정원) 학생정원은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이 매 학년도 배정하는 학생정원에 따른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고사

제8조 (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개인 교환학습 인정 기간은 1개월(공휴일 포함 30일), 단체 교환학습은 2주(공휴일 포함 14일)로 한다.
- ④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로 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로 한다.
- ⑤ 기타 교환학습과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수업일수)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함에 따라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0조(고사)

- ① 고사는 학기 당, 1차 고사와 2차 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기타 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포함)가 실시되는 학기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교과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과정평가(수행평가)를 실시한다. (자세한 방법과 내용은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11조 (학년) 학년은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여름방학 후 개학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국경일, 공휴일, 임시 공휴일
 - (2)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 (3) 개교기념일(3월 23일)
 - (4) 재량휴업, 임시휴업
- ② 제 1항중 (2)호의 휴가 기간은 제 9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결정한다.
- ③ 제 1항의 (4)호는 비상 재해 및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④ 휴업일이라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13조 (수료·졸업)

-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 일수와 성적을 고려하여 교직원 사정회의 결정에 의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 27조 동 시행령 제9조와 53조에 의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졸업장) 학교장은 전 학년의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제 시행 규정

제15조 (목적)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 10. 29.)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시행방침)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 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며,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④ 조기 진급 등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제17조 (조기 진급·조기 졸업)

-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중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중학교는 2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18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대상자의 선정 기준)

- ①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 성취도가 모두 A인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터)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19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절차)

-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18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 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 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0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18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이 제18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중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 성취도가 모두 A인 자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1조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19조 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 (2) 제20조 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21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제21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장 개별화 교육

제23조 (개별화 교육 운영위원회) 특수교육 진흥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화 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개별화 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 (구성) 위원회는 교사 5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2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본교 재직기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즉시 위원장이 보궐 임명한다.

제26조 (기능)

- ① 개별화 교육 대상 학생의 능력 수준에 맞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우고 목표 도달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에 관한 사항
- ② 학기중에 배치되는 경우의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제9장 입학·전학·편입학 및 재입학

제27조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8조 (입학 결정) 본교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8조 1항 및 2항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29조 (의무교육면제·유예·정원외 관리 중인자의 취학)

- ① 의무교육을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중인 자(본인과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로서 본교에 취학(재취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취학희망 학년의 수학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취학할 학년을 결정하고 취학을 허가한다.

- ③ 교과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국내외 정규 학교의 총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한 학년과 본인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취학 학년을 고려하여 평가 교과목,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며, 이때 학교성적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본인 및 보호자는 취학 희망 학년을 선택하여 취학 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국내외 정규 학교의 총 재학 기간과 다르게 취학 학년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학생 본인 및 보호자는 학교 측의 설명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 ⑤ 국내외 총 재학 기간 합산 결과에 따라 해당 학년 또는 그 이하 학년으로 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의 심사로 취학 가능성에 대한 평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조개정. 04. 06. 01)

제30조 (귀국 학생 등의 전·편입학)

- ①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체류하면서 정규 학교에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이나 외국인 학생, 탈북자(자녀 포함)가 본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년별 정원외 2% 내에서 허가한다.
- ② 제1항의 귀국 학생 중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유학 등 불법 출국하여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 비정규학교에서 취학한 후 귀국한 학생 등은 일반 전·편·재 입학을 포함하여 학년별 정원외 3% 이내에서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허가한다. (조신설. 04. 06. 01)

제31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서약서) 입학(전·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로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 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타교 전학)

- ① 의무취학 중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지 이전 중학교에서 전학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비 의무 취학지역으로 전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배정된 학교에서 전학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장 유예 및 상별

제36조 (유예)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에게 유예원을 출원하여야 한다.
- ②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은 판결서류를 갖추어 보증인이 학교장에게 유예 원을 출원하여야 한다.
- ③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예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④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 (학생포상 및 징계)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8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정일여자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정일여자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정일여자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0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1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42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44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5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4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3. 조정의 결과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0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52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5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7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12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9조에 따라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58조(역할)

- ①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 ② 미취학 아동 또한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 ③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 ④ 그밖에 취학 의무 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9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정읍시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에서 1인 이상 포함한다.

제60조(회의의 소집)

- ① 제58조 ①②③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④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 ② (정기)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미개최 가능)
- ③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61조(회의 개의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63조(회의록 작성)

-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②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64조(학칙 개정)

- ① 학칙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설치 목적, 명칭, 위치, 남녀공학, 학과명칭,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승인 후 학칙으로 확정, 시행한다.

부 칙

1. 1983년 3월 1일 제정
2. 1996년 3월 1일 제 1차 개정
3. 1997년 11월 3일 제 2차 개정
4. 1999년 11월 3일 제 3차 개정
5. 2002년 12월 18일 제 4차 개정
6. 2004년 6월 1일 제 5차 개정
7. 2005년 2월 24일 제 6차 개정
8. 2005년 4월 16일 제 7차 개정
9. 2006년 3월 10일 제 8차 개정
10. 2009년 3월 1일 제 9차 개정
11. 2011년 4월 6일 제10차 개정
12. 2013년 4월 5일 제11차 개정
13. 2018년 4월 18일 제12차 개정
14. 2019년 12월 26일 제13차 개정
15. 2021년 2월 19일 제14차 개정
16. 본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17. 본 학칙은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교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